

「학과구조개선위원회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2013. 4. 29. 제정 판 (시행 2013. 5. 1.) → 2016. 2. 29. 개정 판 (시행 2016. 3. 1.)

바뀜 3 · 신설 0 · 삭제 0 · 번호 변경 0

공식 원본 law.syu.ac.kr · <https://suleap.syu.my/r/85/compare?from=202&to=203> · 내려받은 때 2026. 10. 21. 오전 8:49:41 · 밑줄은 바뀐 부분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학과구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학과구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과의 신·증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과의 명칭 변경 및 통·폐합에 관한 사항 3. 전체정원 및 계열 학과의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원조정 및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과의 신·증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과의 명칭 변경 및 통·폐합에 관한 사항 3. 전체 정원 및 계열 학과의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원조정 및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총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3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위원회는 기획처장(위원장), 기획팀장(서기), 부총장, 교무처장, 교무부처장, 교수(3)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개정문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학과구조개선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2조 중 "전체정원"을 "전체 정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총장이 위촉한다."를 "기획처장(위원장), 기획팀장(서기), 부총장, 교무처장, 교무부처장, 교수(3)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